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분리발주 제외사유서

1. **제외대상** : 영상감시장치, 보안용 카메라
2. **관련근거** :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(약칭:판로지원법)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
3. **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에 의하지 않는 사유**
   - ❍ 당사는「판로지원법」제2조제2항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동 법률의 적용 대상 기관이 아님. ※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의견 회신(성장지원과-2433,2021.11.23.)
   - ❍ 또한「판로지원법 시행령」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정 기술 또는 시스템 간 연계가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외의 방법으로 추진 가능함.
   - ❍ 본 사업은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에 대하여 분리발주와 동일한 효과를 확보할 수 있는 혼합방식으로 추진하며, 해당 품목 제조사가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.
   - ❍ 아울러 본 사업은 3D 기반 지능형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단순 영상감시장치 및 보안용 카메라 구매·설치 사업이 아닌, 역사 내 시설물 장애 감시, 화재 등 비상상황 대응, 상황 발생 시 카메라 팝업 표출 등 다양한 시스템과의 연계가 필요한 복합 사업으로서, 분리발주 시 시스템 간 호환성 저하 및 통합운영 문제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려울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과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통합 발주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함.

METRO 9

4. **분리발주 제외 사례**
   - ❍ 서울시메토로9호선 발주 - 철도통합무선통신망(LTE-R) 제작·구매 설치
   - ❍ 서울시메토로9호선 발주 - 신호시스템 제작·구매 설치

2026.08.

서울시메트로9호선(주) 대표이사 (인)

B19[illegible] / 0016217878940[illegible] / 20260828 14:14:29